|  |  |  |
| --- | --- | --- |
| **1.2.4 의료폐기물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380호  《의료폐기물 관리조례》는 2003년 6월 4일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공포하며 공포하는 날로부터 실시한다.  총리 온가보  　　 2003년 6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의료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방지법》과《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 예방, 보건 및 기타 해당 활동 중 발생한 직접 혹은 간접적 감영성, 독성 및 기타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의 분류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 주관부서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서 함께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3조** 이 조례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및 감독관리 등 활동에 적용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치료한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하고 처리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폐기한 마취, 정신, 방사성, 독성 등 약품 및 그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해당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해당 규정,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가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집중 무해화 처리를 추진하고 해당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격려한다.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책임지고 건설한다.  국가는 편벽하고 빈곤한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적정한 지원을 한다.  **제5조**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활동 중의 질병방지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활동 중의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타 해당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와 감독관리부서 및 그 사업인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 고발, 적발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의료폐기물 관리의 일반 규정**  **제7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제를 확립하고 정비하며 그 법정 대표인은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직책을 착실히 수행하고 의료폐기물로 인해 초래된 전염병전파와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8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관련 규장 제도와 의외 사고 발생 시의 응급 예방책을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감독부서나 전직(겸직)인원을 설치하여 본 단위의 의료폐기물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검사, 독촉, 실행하며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9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본 단위의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하여 해당 법률과 전업기술, 안전보호 및 긴급처리 등 지식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10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효과적인 직업위생보호조치를 취하고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제품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 시 해당인원에 대하여 면역을 접종하여 건강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제11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 관리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제12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등기해야 하며 등기 내용에는 의료폐기물의 출처, 종류, 중량 혹은 수량, 인수인계시간, 처리방법, 최종 행방 및 담당자 서명 등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등기 자료는 적어도 3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의료폐기물 유실, 새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이 유실, 새거나 확산 되였을 시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손상을 줄이는 긴급 처리조치를 취하고 병을 초래한 인원에게 의료구호와 현장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소재지 현 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위해 입을 가능이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의료폐기물을 양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송 과정 중에 의료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비 저장장소에서 의료폐기물을 쏟아버리고 방치해 놓거나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에 섞는 것을 금지한다.  **제15조**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철도, 항공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육로통로가 있는 것은 해로를 통한 의료폐기물운송을 금지한다. 육로통로가 없고 반드시 수로를 거쳐 운송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은 구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거치고 엄격한 환경보호조치를 취한 후 수로를 통하여 운송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과 여객을 동일한 운송도구에서 싣는 것을 금지한다.  음료수 수원 보호지역의 수역에서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장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  **제16조** 의료위생기구는 본 단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즉시에 수집하고 종류별 누출 방지, 예리한 물체 침투방지 전용 포장재나 밀폐된 용기 내에 놓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포장재, 용기는 선명한 경고표식과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포장재, 용기의 표준과 경고표식의 규정은 국무원 위생행정 주관부서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함께 제정한다.  **제17조** 의료위생기구는 의료폐기물의 임시저축시설, 설비를 건립하고 의료폐기물을 옥외에 저축해서는 안 된다. 의료폐기물 임시저축의 시간은 2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료폐기물의 임시저축 시설, 설비는 의료구역, 식품가공구역과 인원 활동구역 및 생활쓰레기 저장장소와 멀리 떨어져야 하고 선명한 경고표식과 누출 방지, 쥐 예방, 모기 파리 예방, 바퀴 예방, 도난 방지 및 아동 접촉 예방 등 안전조치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임시저장 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청결해야 한다.  **제18조** 의료위생기구는 누출 예방, 분산 예방하는 전용 운송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단위에서 확정한 내부 의료폐기물 운송시간, 노선, 의료폐기물을 임시저장 지점에 수집, 운송해야 한다.  운송도구는 사용 후 의료위생기구 내 지정한 지점에서 즉시에 소독과 청결해야 한다.  **제19조** 의료위생기구는 근처에서 집중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즉시에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에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중 병원체의 배양기, 표본과 세균종류, 독 종류 저장액 등 고 위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에 제출하여 처리하기 전에 현지에서 소독해야 한다.  **제20조** 의료위생기구에서 발생한 오수,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배설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소독하여야 하고 국가 규정의 배출 표준에 도달한 후 오수처리시스템으로 배출할 수 있다.  **제21조** 의료위생기구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촌에 대해 현 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그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스스로 현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스스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아래 기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사용 후의 일회용 의료기구와 사람에게 손상을 초래하기 쉬운 의료폐기물은 소독하고 형태파괴 처리를 해야 한다.  (2)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즉시에 소각해야 한다.  (3)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소독 후 집중 매립해야 한다.  **제4장 의료폐기물의 집중처리**  **제22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는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환경보호와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의료폐기물 저장, 처리시설이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2) 교육을 받은 기술인원 및 상응 기술공인을 구비해야 한다.  (3) 의료폐기물 처리효과 검사, 평가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원을 구비해야 한다.  (4)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확보하는 규장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제24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 단위의 저축, 처리시설은 주민(농촌)거주 구역, 수원 보호구역과 교통 간선을 멀리하고 공장, 기업 등 사업장소와 적정한 안전보호 거리를 두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는 최소한 이틀에 한번씩 의료위생기구 에 가서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송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저장, 처리를 담당해야 한다.  **제26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을 운송할 시 국가 해당 위험화물운송관리의 규정을 지키고 선명한 의료폐기물 표식이 있는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은 누출 예방, 분산 예방 및 기타 환경보호와 위생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송 전용 차량을 사용한 후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장소 내에서 즉시에 소독과 청결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운송전용차량으로 기타 물품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는 의료폐기물 운송 과정 중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폐기물을 버리거나 분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는 오염물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장치가 항상 정상운영 상태에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제29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가규정의 환경보호, 위생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0조**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위생행정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오염방지와 위생학 효과에 대해 검사,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 평가 결과는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의 기록부에 저장하여 반년마다 한번씩 소재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와 위생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의 의료폐기물 처리는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의료위생기구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아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의료 원가에 넣을 수 있다.  **제32조** 각 지역에서는 현존 고체폐기물 처리시설과 기타 시설을 이용하고 개조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집중처리하고 기본 환경보호와 위생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33조** 집중처리시설이 없거나 처리능력이 부족한 도시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구역의 시급 이상 도시에서 일년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고 현 급 시는 2년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현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의 건설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이 아직 건설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와 위생요구에 부합되는 의료폐기물 과도적 처리방안을 제정하고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방식과 처리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34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에 따라 분담하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할 시 질병예방사업 및 사업인원의 위생보호 등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독검사나 비정기적인 추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6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 수집, 운송, 저장, 처리할 시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독검사나 비정기적인 추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감독검사와 추출검사 결과를 교환해야 한다. 감독검사나 추출 검사 중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단위에 폐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시 책임을 과하여 즉시에 폐해를 제거해야 한다.  **제38조**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와 감독관리부서 및 그 사업인원이 이 조례를 위반 행위의 신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즉시에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감독검사의 직무를 이행 할 시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해당 단위에 대하여 현지 검사, 상황 파악, 현장 감독, 증거 수집을 진행한다.  (2) 의료폐기물관리 관련 자료를 검열하거나 복사하고 샘플을 수집한다.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책임을 과하여 위법행위를 중단케 한다.  (4) 이 조례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장소, 설비, 운송도구와 물품을 압류하거나 임시 보류한다.  (5) 이 조례 규정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40조**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당하여 전염병 전파 혹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염병 전파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에 대해 증명할 증거가 있을 시 위생행정 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임시 공제조치, 인원분산, 현장 공제 조치를 취하고 수요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이 있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제41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는 해당부서의 조사, 감독, 증거수집에 대하여 협력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거짓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2조** 현 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의료폐기물 과도적 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상급 인민정부에서 통보 비평하고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을 건설 혹은 의료폐기물 과도적 처리방안을 제정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주요 지도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제43조** 현 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나 기타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즉시에 처리하지 않으며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이 있을 시 즉시에 손상감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타 직무를 소홀히 하며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독직 행위가 있는 것은 본급 인민정부 혹은 상급 인민정부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통보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주요 담당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직위를 낮추거나 해직, 해고의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것은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통보 비평하고 책임을 과하여 위법으로 발급한 증서를 회수하는 동시에 주요 담당자,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45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를 건립, 완비 하지 않거나 감독관리부서나 전(겸)직 인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2) 해당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전문기술, 안전보호 및 긴급 처리 등 지식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과 관리인원에 대하여 직업 위생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등기하지 않았거나 등기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5) 사용 후 의료폐기물 운송도구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 지점에서 즉시에 소독과 청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의료폐기물을 즉시에 수집, 운송하지 않을 경우  (7)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오염보호와 위생학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 평가하지 않거나 검사, 평가효과를 보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46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동시에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5000원 이상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축시설이나 설비가 환경보호, 위생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의료폐기물을 종류에 따라 전용 포장재나 용기에 넣지 않을 경우  (3) 의료폐기물의 운송에서 표준에 부합되는 전용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료폐기물 운송 차량을 사용하여 기타 물품의 운송할 경우  (4) 오염물배출 온라인 모니터링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장치가 항상 정상운행상태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제47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동시에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증서발급 원 부서에서 직업허가증서나 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 혹은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 운송과정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리고 비 저장 지점에서 의료폐기물을 쏟거나 쌓아두거나 의료폐기물을 기타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에 혼입하는 경우  (2) 위험폐기물 이동전표 관리제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3) 의료폐기물을 영엽 허가증이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줘서 수집, 운송, 저장, 처리하는 경우  (4)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국가규정의 환경보호, 위생표준, 규범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수,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배설물에 대하여 엄격한 소독을 하지 않았거나 국가규정의 배출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수처리시스템에 배출시킨 경우  (6) 치료하는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의해 발생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의료폐기물에 따라 관리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제48조** 의료위생기구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규정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오수,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배설물을 도시배수관망에 배출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0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원 증서 발급 부서에서 작업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9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단위에서 의료폐기물의 유실, 누출, 확산이 발생하였을 시 긴급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즉시에 위생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주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원 증서 발급 부서에서 직업허가증이나 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 혹은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0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 법 집행인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법 집행인원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거나 법 집행부서의 검사, 감독, 증거 수집을 협조하지 않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개정을 거절하는 것은 원 발급부서에서 직업허가증이나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 혹은 취소한다.《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하고 치안관리 위법행위를 구성한 것은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의료위생기구에서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여건을 갖추지 못한 농촌에 대하여 이 조례의 요구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현 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서나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각자의 직무에 따라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 증서발급 부서에서 직업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2조**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처리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즉시에 위법행위를 중단하게 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3조** 의료폐기물 양도, 매매, 의료폐기물을 우송 혹은 철도, 항공을 통하여 운송하거나 이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수로를 통하여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양도, 매매 쌍방, 우송인, 탁송인의 위법행위를 즉시에 중단하게 하고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00원 이상인 것은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것은 5000원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송업자가 탁송인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운송해주거나 운송업자가 의료폐기물과 여객을 동일한 도구에서 운송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전파나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을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상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민사배상책임을 진다.  **제7장 부 칙**  **제55조** 산아 제한 기술서비스, 의학 과학연구, 교육, 시체검사와 기타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직접 혹은 간접 감염성, 독성 및 기타 위해성 폐기물의 관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56조** 부대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의 관리는 중화인민해방군 위생주관부서에서 이 조례를 참조하여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57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 |  | **医疗废物管理条例**  国务院令第380号  　　《医疗废物管理条例》已经2003年6月4日国务院第十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二○○三年六月十六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医疗废物的安全管理，防止疾病传播，保护环境，保障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和《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所称医疗废物，是指医疗卫生机构在医疗、预防、保健以及其他相关活动中产生的具有直接或者间接感染性、毒性以及其他危害性的废物。  　　医疗废物分类目录，由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公布。  **第三条** 本条例适用于医疗废物的收集、运送、贮存、处置以及监督管理等活动。  　　医疗卫生机构收治的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产生的生活垃圾，按照医疗废物进行管理和处置。  　　医疗卫生机构废弃的麻醉、精神、放射性、毒性等药品及其相关的废物的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标准执行。  **第四条** 国家推行医疗废物集中无害化处置，鼓励有关医疗废物安全处置技术的研究与开发。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组织建设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  　　国家对边远贫困地区建设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给予适当的支持。  **第五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对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活动中的疾病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活动中的环境污染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与医疗废物处置有关的监督管理工作。  **第六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和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的违法行为进行举报、投诉、检举和控告。  **第二章 医疗废物管理的一般规定**  **第七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建立、健全医疗废物管理责任制，其法定代表人为第一责任人，切实履行职责，防止因医疗废物导致传染病传播和环境污染事故。  **第八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制定与医疗废物安全处置有关的规章制度和在发生意外事故时的应急方案；设置监控部门或者专（兼）职人员，负责检查、督促、落实本单位医疗废物的管理工作，防止违反本条例的行为发生。  **第九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对本单位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等工作的人员和管理人员，进行相关法律和专业技术、安全防护以及紧急处理等知识的培训。  **第十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有效的职业卫生防护措施，为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等工作的人员和管理人员，配备必要的防护用品，定期进行健康检查；必要时，对有关人员进行免疫接种，防止其受到健康损害。  **第十一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的规定，执行危险废物转移联单管理制度。  **第十二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对医疗废物进行登记，登记内容应当包括医疗废物的来源、种类、重量或者数量、交接时间、处置方法、最终去向以及经办人签名等项目。登记资料至少保存３年。  **第十三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医疗废物流失、泄漏、扩散。  　　发生医疗废物流失、泄漏、扩散时，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减少危害的紧急处理措施，对致病人员提供医疗救护和现场救援；同时向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并向可能受到危害的单位和居民通报。  **第十四条** 禁止任何单位和个人转让、买卖医疗废物。  　　禁止在运送过程中丢弃医疗废物；禁止在非贮存地点倾倒、堆放医疗废物或者将医疗废物混入其他废物和生活垃圾。  **第十五条** 禁止邮寄医疗废物。  　　禁止通过铁路、航空运输医疗废物。  　　有陆路通道的，禁止通过水路运输医疗废物；没有陆路通道必需经水路运输医疗废物的，应当经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并采取严格的环境保护措施后，方可通过水路运输。  　　禁止将医疗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  　　禁止在饮用水源保护区的水体上运输医疗废物。  **第三章 医疗卫生机构对医疗废物的**  **管理**  **第十六条** 医疗卫生机构应当及时收集本单位产生的医疗废物，并按照类别分置于防渗漏、防锐器穿透的专用包装物或者密闭的容器内。  　　医疗废物专用包装物、容器，应当有明显的警示标识和警示说明。  　　医疗废物专用包装物、容器的标准和警示标识的规定，由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共同制定。  **第十七条** 医疗卫生机构应当建立医疗废物的暂时贮存设施、设备，不得露天存放医疗废物；医疗废物暂时贮存的时间不得超过２天。  　　医疗废物的暂时贮存设施、设备，应当远离医疗区、食品加工区和人员活动区以及生活垃圾存放场所，并设置明显的警示标识和防渗漏、防鼠、防蚊蝇、防蟑螂、防盗以及预防儿童接触等安全措施。  　　医疗废物的暂时贮存设施、设备应当定期消毒和清洁。  **第十八条** 医疗卫生机构应当使用防渗漏、防遗撒的专用运送工具，按照本单位确定的内部医疗废物运送时间、路线，将医疗废物收集、运送至暂时贮存地点。  　　运送工具使用后应当在医疗卫生机构内指定的地点及时消毒和清洁。  **第十九条** 医疗卫生机构应当根据就近集中处置的原则，及时将医疗废物交由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  　　医疗废物中病原体的培养基、标本和菌种、毒种保存液等高危险废物，在交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前应当就地消毒。  **第二十条** 医疗卫生机构产生的污水、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排泄物，应当按照国家规定严格消毒；达到国家规定的排放标准后，方可排入污水处理系统。  **第二十一条** 不具备集中处置医疗废物条件的农村，医疗卫生机构应当按照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要求，自行就地处置其产生的医疗废物。自行处置医疗废物的，应当符合下列基本要求：  　　（一）使用后的一次性医疗器具和容易致人损伤的医疗废物，应当消毒并作毁形处理；  　　（二）能够焚烧的，应当及时焚烧；  　　（三）不能焚烧的，消毒后集中填埋。  **第四章 医疗废物的集中处置**  **第二十二条** 从事医疗废物集中处置活动的单位，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领取经营许可证；未取得经营许可证的单位，不得从事有关医疗废物集中处置的活动。  **第二十三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符合下列条件：  　　（一）具有符合环境保护和卫生要求的医疗废物贮存、处置设施或者设备；  　　（二）具有经过培训的技术人员以及相应的技术工人；  　　（三）具有负责医疗废物处置效果检测、评价工作的机构和人员；  　　（四）具有保证医疗废物安全处置的规章制度。  **第二十四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的贮存、处置设施，应当远离居（村）民居住区、水源保护区和交通干道，与工厂、企业等工作场所有适当的安全防护距离，并符合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  **第二十五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至少每２天到医疗卫生机构收集、运送一次医疗废物，并负责医疗废物的贮存、处置。  **第二十六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运送医疗废物，应当遵守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使用有明显医疗废物标识的专用车辆。医疗废物专用车辆应当达到防渗漏、防遗撒以及其他环境保护和卫生要求。  　　运送医疗废物的专用车辆使用后，应当在医疗废物集中处置场所内及时进行消毒和清洁。  　　运送医疗废物的专用车辆不得运送其他物品。  **第二十七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在运送医疗废物过程中应当确保安全，不得丢弃、遗撒医疗废物。  **第二十八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安装污染物排放在线监控装置，并确保监控装置经常处于正常运行状态。  **第二十九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废物，应当符合国家规定的环境保护、卫生标准、规范。  **第三十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按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卫生行政主管部门的规定，定期对医疗废物处置设施的环境污染防治和卫生学效果进行检测、评价。检测、评价结果存入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档案，每半年向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卫生行政主管部门报告一次。  **第三十一条** 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废物，按照国家有关规定向医疗卫生机构收取医疗废物处置费用。  　　医疗卫生机构按照规定支付的医疗废物处置费用，可以纳入医疗成本。  **第三十二条** 各地区应当利用和改造现有固体废物处置设施和其他设施，对医疗废物集中处置，并达到基本的环境保护和卫生要求。  **第三十三条** 尚无集中处置设施或者处置能力不足的城市，自本条例施行之日起，设区的市级以上城市应当在１年内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县级市应当在２年内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县（旗）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的建设，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在尚未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期间，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制定符合环境保护和卫生要求的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确定医疗废物收集、运送、处置方式和处置单位。  **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按照职责分工，对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进行监督检查。  **第三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对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从事医疗废物的收集、运送、贮存、处置中的疾病防治工作，以及工作人员的卫生防护等情况进行定期监督检查或者不定期的抽查。  **第三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中的环境污染防治工作进行定期监督检查或者不定期的抽查。  **第三十七条** 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交换监督检查和抽查结果。在监督检查或者抽查中发现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存在隐患时，应当责令立即消除隐患。  **第三十八条** 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接到对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和监督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行为的举报、投诉、检举和控告后，应当及时核实，依法作出处理，并将处理结果予以公布。  **第三十九条** 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对有关单位进行实地检查，了解情况，现场监测，调查取证；  　　（二）查阅或者复制医疗废物管理的有关资料，采集样品；  　　（三）责令违反本条例规定的单位和个人停止违法行为；  　　（四）查封或者暂扣涉嫌违反本条例规定的场所、设备、运输工具和物品；  　　（五）对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进行查处。  **第四十条** 发生因医疗废物管理不当导致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或者有证据证明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的事故有可能发生时，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采取临时控制措施，疏散人员，控制现场，并根据需要责令暂停导致或者可能导致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作业。  **第四十一条**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对有关部门的检查、监测、调查取证，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和阻碍，不得提供虚假材料。  **第六章 法律责任**  **第四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未依照本条例的规定，组织建设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或者组织制定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的，由上级人民政府通报批评，责令限期建成医疗废物集中处置设施或者组织制定医疗废物过渡性处置方案；并可以对政府主要领导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四十三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未按照本条例的规定履行监督检查职责，发现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的违法行为不及时处理，发生或者可能发生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时未及时采取减少危害措施，以及有其他玩忽职守、失职、渎职行为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违反本条例的规定发给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经营许可证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通报批评，责令收回违法发给的证书；并可以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四十五条**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处２０００元以上５０００元以下的罚款：  　　（一）未建立、健全医疗废物管理制度，或者未设置监控部门或者专（兼）职人员的；  　　（二）未对有关人员进行相关法律和专业技术、安全防护以及紧急处理等知识的培训的；  　　（三）未对从事医疗废物收集、运送、贮存、处置等工作的人员和管理人员采取职业卫生防护措施的；  　　（四）未对医疗废物进行登记或者未保存登记资料的；  　　（五）对使用后的医疗废物运送工具或者运送车辆未在指定地点及时进行消毒和清洁的；  　　（六）未及时收集、运送医疗废物的；  　　（七）未定期对医疗废物处置设施的环境污染防治和卫生学效果进行检测、评价，或者未将检测、评价效果存档、报告的。  **第四十六条**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5000元以上３万元以下的罚款：  　　（一）贮存设施或者设备不符合环境保护、卫生要求的；  　　（二）未将医疗废物按照类别分置于专用包装物或者容器的；  　　（三）未使用符合标准的专用车辆运送医疗废物或者使用运送医疗废物的车辆运送其他物品的；  　　（四）未安装污染物排放在线监控装置或者监控装置未经常处于正常运行状态的。  **第四十七条**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上１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１万元以上３万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或者经营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在运送过程中丢弃医疗废物，在非贮存地点倾倒、堆放医疗废物或者将医疗废物混入其他废物和生活垃圾的；  　　（二）未执行危险废物转移联单管理制度的；  　　（三）将医疗废物交给未取得经营许可证的单位或者个人收集、运送、贮存、处置的；  　　（四）对医疗废物的处置不符合国家规定的环境保护、卫生标准、规范的；  　　（五）未按照本条例的规定对污水、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排泄物，进行严格消毒，或者未达到国家规定的排放标准，排入污水处理系统的；  　　（六）对收治的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产生的生活垃圾，未按照医疗废物进行管理和处置的。  **第四十八条** 医疗卫生机构违反本条例规定，将未达到国家规定标准的污水、传染病病人或者疑似传染病病人的排泄物排入城市排水管网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上１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１万元以上３万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九条**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发生医疗废物流失、泄漏、扩散时，未采取紧急处理措施，或者未及时向卫生行政主管部门和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报告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１万元以上３万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或者经营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条**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无正当理由，阻碍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执法人员执行职务，拒绝执法人员进入现场，或者不配合执法部门的检查、监测、调查取证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或者经营许可证件；触犯《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一条** 不具备集中处置医疗废物条件的农村，医疗卫生机构未按照本条例的要求处置医疗废物的，由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各自的职责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造成传染病传播或者环境污染事故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执业许可证件；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二条** 未取得经营许可证从事医疗废物的收集、运送、贮存、处置等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立即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１倍以下的罚款。  **第五十三条** 转让、买卖医疗废物，邮寄或者通过铁路、航空运输医疗废物，或者违反本条例规定通过水路运输医疗废物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转让、买卖双方、邮寄人、托运人立即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00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２倍以上５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00元的，并处5000元以上２万元以下的罚款。  　　承运人明知托运人违反本条例的规定运输医疗废物，仍予以运输的，或者承运人将医疗废物与旅客在同一工具上载运的，按照前款的规定予以处罚。  **第五十四条**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违反本条例规定，导致传染病传播或者发生环境污染事故，给他人造成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  **第七章 附 则**  **第五十五条** 计划生育技术服务、医学科研、教学、尸体检查和其他相关活动中产生的具有直接或者间接感染性、毒性以及其他危害性废物的管理，依照本条例执行。  **第五十六条** 军队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的管理由中国人民解放军卫生主管部门参照本条例制定管理办法。  **第五十七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